

22. 북한주민접촉 불허처분 사건

<헌재 2000. 7. 20. 98헌바6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 판례집 12-2, 52>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건이다.

청구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는 단체로서, 북한주민의 기아해결을 돕기 위하여 북한에 쌀 또는 현금을 보내고자 1996. 8. 23.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북한주민접촉신청을 하였으나, 통일부장관은 같은 해 9. 10. 위 신청이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에 관한 정부방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이던 1998. 2. 19. 위 불허처분의 근거법률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998. 7. 16. 위 취소청구 및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1998.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1988. 7. 7. 발표된 이른바 ‘7. 7. 선언’의 법률적 후속조치로 제정되었는바, 남북한간의 교류확대 및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은 대체로 남북한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데에 기여하겠지만, 그러한 접촉이나 교류가 일정한 원칙이나 제한 없이 방만하게 이루어진다면, 국가의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북한주민과 접촉·교류하는 개개 당사자들의 목적달성이나 안전에도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을 원하는 자로부터 승인신청을 받아 그 접촉의 시기와 장소, 대상과 목적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현 단계에서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화통일의 사명을 천명한 헌법 전문이나 평화통일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조, 대통령의

평화통일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 제66조 제3항의 규정 및 기타 헌법상의 통일 관련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되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나 제14조에서 규정한 거주·이전의 자유, 제18조에서 규정한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제한으로서, 앞서 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